

2022년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우리 원은 청탁금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합니다.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1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서면자문을 요청받았는데 이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	<p>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임 또한 강의 강연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행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 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함</p> <p>따라서 서면자문의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 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p> <p>다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특히 제9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p> <p>*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p>	-